

#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

China Non Tariff Barriers Issue

중국,  
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의  
개정 초안 및 의견수렴 공고



## 용어 정의 및 사용 기준 일부 수정, 관련 식품 수출 시 변경 규정 확인해야

중국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(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)는 《2016년도 식품안전국가표준 프로젝트 계획(제1차)에 관한 통지(关于印发2016年度食品安全国家标准项目计划(第一批)的通知》를 근거로 개정한 《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(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, 이하 '초안')》을 공고하고, 이에 대한 의견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힘

본 초안은 《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(GB14880-2012)에서 특수식사용식품의 정의를 삭제하고 영양강화제 사용 요구사항 및 사용 규정 등을 수정한 것으로, 의견수렴을 거친 후 《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(GB14880-2012)》을 대체할 예정임. 따라서 영양강화제를 사용한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영양강화제의 사용 요구사항 및 규정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, 향후 식품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

※ 《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(초안)》의 주요 변경 사항

### 1. 특수식사용식품의 정의 삭제(제2조)

- 《선포장 특수식사용식품표준(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标签(GB14880-2012))》과 효과적인 연계를 위하여 해당 초안에서는 특수식사용식품에 관한 정의를 삭제함

### 2. 영양강화제 사용의 요구사항 수정(제4조)

- 일부 영양강화제는 색상, 맛, 향, 조리 특성 등 식품의 일반적인 특성이 약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, 해당 초안에서는 '원칙상'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엄격하게 규정함

### ▶ 개정 초안 및 현행 표준 비교(제4조)

개정 초안	현행 표준
<b>제4조 영양강화제 사용의 요구사항</b> 4.4 식품에 첨가된 영양강화제는 원칙상[추가] 식품의 색상, 맛, 향, 조리 특성 등 식품의 일반적인 특성을 변경시키면 안됨	<b>제4조 영양강화제 사용의 요구사항</b> 4.4 식품에 첨가된 영양강화제는 식품의 색상, 맛, 향, 조리 특성 등 식품의 일반적인 특성을 변경시키면 안됨

### 3. 영양강화제의 사용 규정 수정(제6조)

- 본 초안에서 추가로 정의한 <sup>(\*)</sup>대중 식품 강화 및 <sup>(\*\*)</sup>자발적 식품 강화에 사용이 허용된 강화제 종류와 사용량을 별도로 규정함

#### ▶ 개정 초안 및 현행 표준 비교(제6조)

개정 초안	현행 표준
<p><b>제6조 영양강화제 사용 규정</b></p> <p><b>6.1 대중 식품 강화 식품의 유형과 사용에 허용되는 영양소 종류와 사용량은 부록 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.</b>  <b>만약 대중 강화가 이루어진 경우, 부록 A.1에 나열된 모든 영양소를 강화해야 함. 이를 바탕으로 부록 A.2에 따라 선택적 강화를 시행할 수 있음</b><a href="#"><b>[추가 및 수정]</b></a></p> <p><b>6.2 자발적 식품 강화 중 영양강화제 사용은 부록 B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</b><a href="#"><b>[추가 및 수정]</b></a></p> <p><b>6.3 대중 식품 강화 및 이에 사용이 허용된 강화제 화합물의 출처는 부록 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</b><a href="#"><b>[추가 및 수정]</b></a></p> <p><b>6.4 특수식사용식품의 영양소 및 기타 영양성분의 함량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이 허가된 영양강화제 및 화합물 공급원은 부록 D</b><a href="#"><b>[수정]</b></a> 및(또는) 관련 제품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</p>	<p><b>제6조 영양강화제 사용 규정</b></p> <p><b>6.1 식품 중 영양강화제의 사용 범위, 사용량은 부록 A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. 사용이 허용된 화합물 공급원은 부록 B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</b></p> <p><b>6.2 특수식사용식품의 영양소 및 기타 영양성분의 함량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이 허가된 영양강화제 및 화합물 공급원은 부록 C 및(또는) 관련 제품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</b></p>

(\*)대중 식품 강화: 대중이 널리 소비하는 특정 식품에 하나 이상의 미량 영양소를 첨가하는 행위를 의미하여,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를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됨

(\*\*)자발적 식품 강화: 대중 식품이외 식품에 하나 이상의 미량 영양소 또는 기타 영양 성분을 첨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, 일반적으로 생산자 재량에 따라 진행됨

### 4. 기타

- 부록 명칭 및 순번, 내용 등을 수정함

### 출처

중국안신(中国安信), 【权威】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关于征求《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》(征求意见稿) 意见的函, 2023.01.20.  
 중국 위생부(卫生部), 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营养强化剂使用标准, 2012.3.15.